

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(제16조제3항 관련)

1. 안전점검자의 자격 및 인원

구 분	안전점검자	자 격	인 원
고압가스제조(충전)자	충 전 원	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가스충전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	충 전 필 요 인 원
	수요자시설 점 검 원	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수요자시설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	가스배달 필 요 인 원
고압가스판매자	수요자시설 점 검 원	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수요자시설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	가스배달 필요인원

2. 점검장비

점검장비 \ 가스별	산 소	불연성 가 스	가연성 가 스	독 성 가 스
가 스 누 출 검 지 기			○	
가 스 누 출 시 험 지				○
가 스 누 출 검 지 액 (檢 知 液)	○	○	○	○
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	○	○	○	○

3. 점검기준

- 가. 충전용기의 설치위치
- 나. 충전용기와 화기와의 거리
- 다. 충전용기 및 배관의 설치상태
- 라. 충전용기, 충전용기로부터 압력조정기·호스 및 가스사용기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와 배관 또는 호스의 가스 누출 여부 및 그 가스의 적합 여부
- 마. 독성가스의 경우 흡수장치·제해장치 및 보호구 등에 대한 적합 여부
- 바. 역화방지장치의 설치여부(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산소를 공급하는 자에 한정한다)
- 사.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(정기점검만을 말한다)

4. 점검방법

- 가. 가스 공급 시마다 점검 실시
- 나.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(이동수단은 제외한다)

5. 점검기록의 작성·보존

- 가. 정기점검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

나. 안전점검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(이동수단에 충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